

검/토/진

이은순 (충북 옥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김민제 (서울 서울대현초등학교 교사)
남인영 (서울 서울지향초등학교 교사)
최지혜 (경기 상도중학교 교사)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이승훈 (대구 대구성보학교 교사)

“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입니다.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정당한 교육활동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의 의견 제시

1. 의견 제시 및 정보 제공 요청

-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
- 자녀 등 피보호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학적의 제·개정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2. 상담 요청 및 이의 제기

상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은 예외로 함)
-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함.

이의 제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함.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함께학교』는 성장형 플랫폼입니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을 추가하고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소통, 연수,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까지, 성장하는 「함께학교」를 기대해 주세요.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공간입니다.

참여 방법

포털에 함께학교를 검색하거나 (togetherschool.go.kr)
안드로이드 및 iOS 어플리케이션 (함께학교)를 활용해 주세요

주요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 정책 제안과 토론**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차담회**
교육부장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통합니다.
- 답답해요**
답답했던 교육고민, 무엇이든 답해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마음건강, 자녀교육, 법률 전문가가 1:1 상담해 드립니다.
- 정보 나눔**
교육 학습정보, 나만의 꿀팁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학교』는 성장형 플랫폼입니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능을 추가하고 성장하는 플랫폼입니다.
소통, 연수,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까지, 성장하는 「함께학교」를 기대해 주세요.

묻고 답하기

Q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있나요?

2024년 2월 기준,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누리집은 <https://forteacher.kedi.re.kr>이며 전화번호는 1899-9876입니다.

Q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는데,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특별휴가 사용 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6일 이내에서'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별 조치 적용 기준」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교육 장이 해당 조치를 내립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 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도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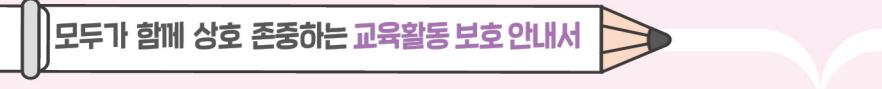
Education Activity Protection Center

구분	주소(센터명/누리집)	대표 전화번호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 https://forteacher.kedi.re.kr	1899-9876
서울	종로구 송월길48 학교보건진흥원 409호 http://www.sen.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2-399-9093, 9094, 9074(상담사) 02-399-9400(번호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1077 메디컬시티 10층 https://www.pen.go.kr 「교원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051-862-1122
대구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사도관1층 http://www.dge.go.kr/forteacher 「교육권보호센터」	053-231-0540~3, 0547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91번길 71 협연빌딩 4층 http://www.ic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32-550-1781~4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98 http://forteacher.gen.go.kr 「교원자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644-9575
세종	북구 서양로 111 동부교육지원청 http://forteacher.gen.go.kr 「교원자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522-9575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 https://www.dje.go.kr/eduhealingnew/ main.do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042-865-9361
울산	중구 북부순환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https://www.us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2-210-5489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https://more.goe.go.kr/epc 「교육활동보호센터」	1600-8787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33-259-0819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http://www.cb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43-290-2251~8
충남	홍성군 홍복읍 산화로 22 충남교육청 http://www.cne.go.kr 「교권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588-933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정예로 874 https://www.jb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63-237-0343~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교육청 https://www.jne.go.kr/human 「교육활동보호센터」	061-260-0531, 061-260-0535(번호사) 061-260-0537(상담사)
경북	구미시 금오로 198-14(남통동)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1층) http://www.gb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4-450-436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경남행복교원드림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811-7679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88번길 24 진양도서관 3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경남행복교원드림센터(진주상담실)」	
제주	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교육청 4층 https://www.jje.go.kr/forteacher 「교육활동보호센터」	064-710-0070

2024년 교육활동 보호 “확실히 달라집니다!”

모두가 함께 상호존중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습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교는 선생님의 사랑과 보살핌, 학부모의 존중과 지지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하여 2023년,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5법]

-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 교원지위법 ▲ 아동학대처벌법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소개합니다.

0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초·중등 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생님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
-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02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민원대응팀)에서 처리
 -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

03 교원 마음건강 지원

- 희망하는 교원 누구나 심리검사 지원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제공
-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 중 희망자에게 전담상담 및 병원 연계 심층 치료 지원

04 피해교원 적극 보호

- 교육활동 침해 축소·온폐 금지
 - 학교장 등이 축소·온폐할 경우, 징계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확대
 - 공무방해, 업무방해, 무고 및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침해행위로 추가
 -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
 -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 분리 조치된 학생은 별도 관리
- 특별교육 의무 이수
 - 특별교육 의무이수자를 출석정지 조치 이상으로 확대
 - ※ 전학조치는 특별교육·심리치료전이라도 우선 시행

05 정부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의무 부여
- 교원의 정당한 지도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부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관련 법령

○ 공무방해(업무방해)

국·공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명예훼손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모욕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폭행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

○ 상해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손괴

타인의 물건,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 행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동성간에도 인정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처리 5단계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업무담당자 대응

- 학생·학부모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재기 포함)
- 보호자에게 연락(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 관련 학생(보호자) 조치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5. 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 회복 및 치유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추수지도
- 결과 보고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추수지도
- 결과 보고



피해교원 보호 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 보장범위)」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배상책임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 1사고당 2억원 한도 •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타법에 따른 공제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 소송비용	학생·학부모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재기 포함)	• 심리법 최대 660만원 • 경·경 수사단계 330만원	•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확정
상해치료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비, 심리상담비	• 동일사유로 보호조치지원을 받은 경우 • 치료 요양비: 200만원 •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휴대폰 훼손 등 비용	• 100만원	
위험대처 서비스	폭행·상해 등 중대 사안시 긴급 경호	• 20일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입니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교권침해 일①생③기면 구④해주오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신고·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개통일 : 2024. 3. 4.(월)
※ 3.4.(월) ~ 3.17.(일), 2주간은 시범운영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SNS 소통은 상시 가능(카카오톡 채널 1395 추가) 상시 가능

주요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악성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